

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규정

1. 개정이유

가. 市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고도화 및 정원 증원 결과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 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직제규정에 명시된 기구표 변경(별표1)

1) 변경 : (현)자산관리본부 → (개편)투자유치본부

나. 市 협의된 정원증원(30명) 반영 및 직급별 정원표 변경(별표2)

1) 채용 절차 추진을 위해 임시 편제했던 증원 인력(29명)을 조직 개편 및 직제 변경에 맞춰 실무 부서로 재배치

(1) 2급(+2명), 3급(+6명), 4급(+7명), 5급(+7명), 6~7급(+7명)으로 재조정

(2) 운영3급(+1, 영양사)은 변경 없음

3. 사전절차

가. 사규안 입안예고 생략 : 사규 입안예고제 시행내규 제4조제1항제1호

나. 홈페이지 사전게시 생략 :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제3항

다.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: 사규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4호

라. 이사회 의결 : 2026. 5. 21. 원안가결

마. 市 승인 : 2026. 5. 26. 원안승인

기획조정실-3272(2026. 6. 19.)호

인천도시공사 정관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

2026년 7월 1일

정관 제735호

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규정

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

사 장

경영혁신본부	자산관리본부	도시개발본부	주거복지본부	균형발전본부	광역도시재생 지원센터
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

개정안

사 장

```

graph TD
    A[국토교통부] --> B[경영혁신본부]
    A --> C[투자유치본부]
    A --> D[도시개발본부]
    A --> E[주거복지본부]
    A --> F[균형발전본부]
    A --> G[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]
  
```

[별표 2]

현행

정원표(제13조 관련)

구분	계	임원	관리직		사무직·기술직				운영직			
		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~7급	1급	2급	3급	4급
임직원	465 (20)	4	3 (1)	21 (2)	56 (5)	111 (7)	112 (3)	143 (2)	3	4	6	2

- 비고: 1. 임원은 감사 포함 인원
2. ()는 계약직(PM 포함)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

개정안

정원표(제13조 관련)

구분	계	임원	관리직		사무직·기술직				운영직			
		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~7급	1급	2급	3급	4급
임직원	465 (20)	4	3 (1)	23 (2)	62 (5)	118 (7)	119 (3)	121 (2)	3	4	6	2

- 비고: 1. 임원은 감사 포함 인원
2. ()는 계약직(PM 포함)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

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

1. 개정이유

가. 市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고도화 및 정원 증원 결과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제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구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의 정리(제10조)

1) iH도시연구소를 처급으로 격상함에 따라 팀급 조직에서 삭제

2) 기구 명칭변경

(1) (현)자산관리본부 → (개편)투자유치본부

(2) (현)iH도시연구소 → (개편)iH도시연구실

나. 직제규정에 명시된 기구표 변경(별표1)

다. 제12조(정원)의 정원표 변경(별표2)

1) 직위를 고려한 직급정원 8명 : 2급(+2명), 3급(+6명)

2) 현 직급별 비율반영 21명 : 4급(+7명), 5급(+7명), 6~7급(+7명)

3)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영양사 1명 : 운영직 3급(+1명)

라. 제13조(업무분장)의 업무분장 변경(별표3)

3. 사전절차

가. 사규안 입안예고 생략 : 사규 입안예고제 시행내규 제4조제1항제1호

나. 홈페이지 사전게시 생략 :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제3항

다.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: 사규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4호

라. 이사회 의결 : 2026. 5. 21. 원안가결

마. 市 승인 : 2026. 5. 26. 원안승인

기획조정실-3272(2026. 6. 19.)호

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

2026년 7월 1일

규정 제736호

직 제 규정 일부개정규정

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자산관리본부”를 “투자유치본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iH 도시연구소·정보보안실”을 “정보보안실”로 한다.

별표1부터 별표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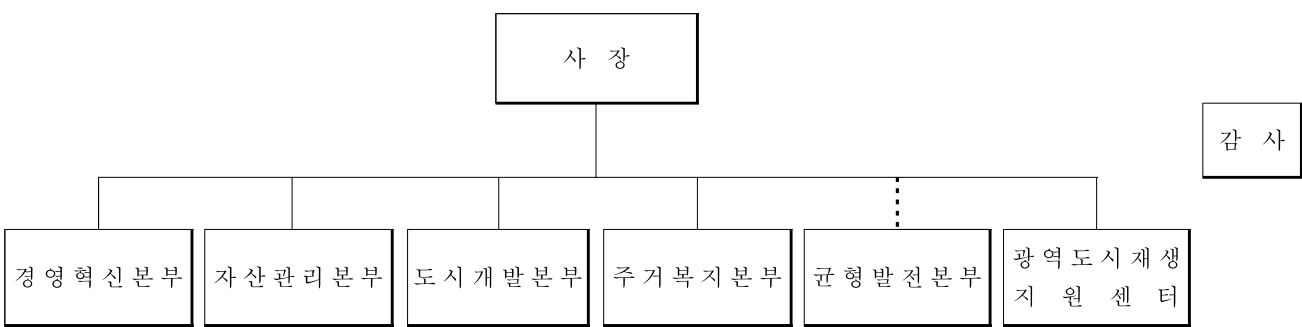
부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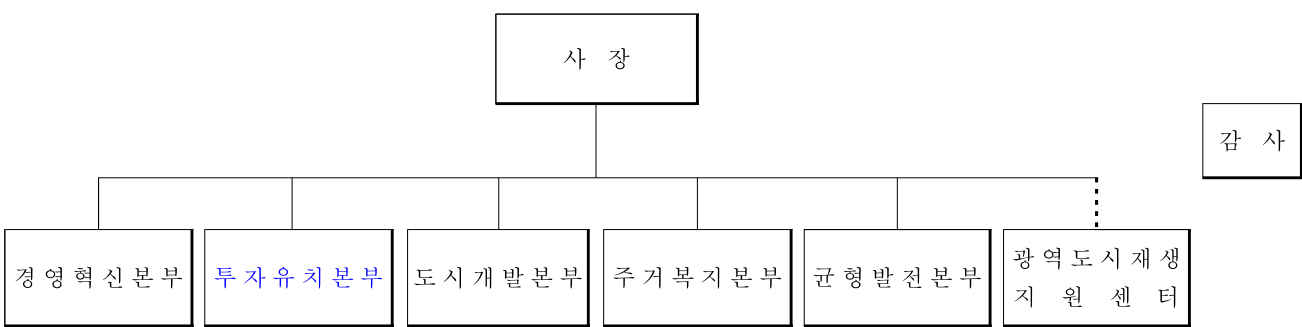
현행

기구표(제10조제4항 관련)



개정안

기구표(제10조제4항 관련)



[별표 2]

현행

정원표(제12조 관련)

구분	계	임원	직급별									
		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~7급	운영 1급	운영 2급	운영 3급	운영 4급
총 계	435 (20)	4	3 (1)	21 (2)	56 (5)	111 (7)	112 (3)	114 (2)	3	4	5	2
임원	4	4										
관리직	24		3	21								
사무·기술직	393				56	111	112	114				
운영직	14								3	4	5	2

※ 사무직·기술직 통합 운영

비고: 1. 임원은 감사 포함 인원

2. ()는 계약직(PM 포함)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

개정안

정원표(제12조 관련)

구분	계	임원	직급별									
		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~7급	운영 1급	운영 2급	운영 3급	운영 4급
총 계	465 (20)	4	3 (1)	23 (2)	62 (5)	118 (7)	119 (3)	121 (2)	3	4	6	2
임원	4	4										
관리직	26		3	23								
사무·기술직	420				62	118	119	121				
운영직	15								3	4	6	2

※ 사무직·기술직 통합 운영

비고: 1. 임원은 감사 포함 인원

2. ()는 계약직(PM 포함)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

[별표 3]

현행

업무분장표(제13조 관련)

본부별	업무분장 내용
경영혁신본부	· 중장기 경영계획, 경영방침, 주요업무(사업)계획,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업무 · 조직, 대내외 평가관리(경영평가, CEO평가, 내부평가), 경영혁신 업무 · 투자심사, 원가관리, 리스크 및 사업관리 업무 · 국회 및 시 의회 업무 · 신규사업 추진부서 지정·관리 등 업무 · ESG 업무 총괄 · 총무, 인사, 교육, 복지후생, 노무, 전산 업무 · 홍보, 고객만족, 사회공헌, 민원관리 · 인권경영 업무총괄 · 예산, 자금, 회계, 세무, 계약, 지출 업무 등 · 사옥 관리
자산관리본부	· 제반 사업에 대한 판매, 투자유치 업무 · 도심항공운송수단 관련 업무 · 자산관리회사(AMC) 운영 · 리츠사업·SPC사업 총괄·관리 업무 · 일반사업용 자산의 매입, 관리 및 운영 총괄 · 소송·사규, 각종 법규,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정책 건의 등
도시개발본부	· 단지·택지개발사업 총괄 · 단지·택지개발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전략, 실행방안 수립 · 신도시(검단, 계양)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· 스마트시티, 문화·환경 업무 · 전사 사업에 대한 문화재, 기계, 전기, 정보통신, 환경, 조경, 소방, 경관 등 기술 업무 · 신재생에너지(풍력, 태양광, 연료전지 등) 발전 사업 발굴, 추진전략 수립·시행 · 신재생에너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· 전사 AI 전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총괄
주거복지본부	· 주거복지(임대분야) 중장기 추진전략, 실행방안 수립 · 임대주택(상가)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 관리·운영 · 분양 및 임대주택 하자관리 업무 · 중장기 건축, 주택사업계획 수립·시행 · 주택·일반건축물 건설사업 총괄 · 광역주거복지센터(한시조직) 운영 등 · 주택·일반건축물 건설사업 기계, 전기, 정보통신, 조경, 소방 등 기술 업무

본부별	업무분장 내용
균형발전본부	· 도시재생사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· 도시재생사업 관련 추진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·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·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업무 · 산업단지 관리 및 재생 업무 · 산단 대개조 사업 관련 업무 · 제반 사업에 대한 보상(보상수탁 업무 포함) 업무 등
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* 한 시 조직	· 인천광역시에서 관련법 및 조례 등에 따라 위·수탁하는 업무
(사장직속)	· (iH도시연구소) 정책 검토, 미래사업 연구 등 · (안전관리실)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, 각종 심의·자문, 신공법·신기술 업무, 제반사업에 대한 설계표준 및 ISO 업무, 스마트건설기술 총괄 운영 및 관리 등 · (정보보안실)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
감사	· 행정감사, 기술감사, 윤리경영 업무 등

개정안

업무분장표(제13조 관련)

본부별	업무분장 내용
경 영 혁 신 본 부	· 중장기 경영계획, 경영방침, 주요업무(사업)계획,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업무 · 조직, 대내외 평가관리(경영평가, CEO평가, 내부평가), 경영혁신 업무 · 투자심사, 원가관리, 리스크 및 사업관리 업무 · 국회 및 시 의회 업무 · 신규사업 추진부서 지정·관리 등 업무 · ESG 업무 총괄 · 총무, 인사, 교육, 복지후생, 노무, 전산 업무 · 홍보, 고객만족, 사회공헌, 민원관리 · 인권경영 업무총괄 · 예산, 자금, 회계, 세무, 계약, 지출 업무 등 · 사옥 관리
투 자 유 치 본 부	· 제반 사업에 대한 판매, 투자유치 업무 · 도심항공운송수단 관련 업무 · 자산관리회사(AMC) 운영 · 리츠사업·SPC사업 총괄·관리 업무 · 일반사업용 자산의 매입, 관리 및 운영 총괄 · 소송·사규, 각종 법규,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정책 건의 등 · 각종 심의·자문, 신공법·신기술 업무, 제반사업에 대한 설계표준 및 ISO 업무, 스마트건설기술 총괄 운영 및 관리 등
도 시 개 발 본 부	· 단지·택지개발사업 총괄 · 단지·택지개발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전략, 실행방안 수립 · 신도시(검단, 계양)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· 스마트시티, 문화·환경 업무 · 전사 사업에 대한 국가유산, 기계, 전기, 정보통신, 환경, 조경, 소방, 경관 등 기술 업무 · 신재생에너지(풍력, 태양광, 연료전지 등) 발전 사업 발굴, 추진전략 수립·시행 · 신재생에너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
주 거 복 지 본 부	· 주거복지(임대분야) 중장기 추진전략, 실행방안 수립 · 임대주택(상가)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 관리·운영 · 분양 및 임대주택 하자관리 업무 · 중장기 건축, 주택사업계획 수립·시행 · 주택·일반건축물 건설사업 총괄 · 광역주거복지센터(한시조직) 운영 등 · 주택·일반건축물 건설사업 기계, 전기, 정보통신, 조경, 소방 등 기술 업무

본부별	업무분장 내용
균형발전본부	· 도시재생사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· 도시재생사업 관련 추진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·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·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업무 · 산업단지 관리 및 재생 업무 · 산단 대개조 사업 관련 업무 · 제반 사업에 대한 보상(보상수탁 업무 포함) 업무 등
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* 한 시 조직	· 인천광역시에서 관련법 및 조례 등에 따라 위·수탁하는 업무
(사장 직속)	· (IH도시연구실) 정책 검토, 미래사업 연구, 전사 AI 전환전략 및 추진체계 총괄 · (안전관리실)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· (정보보안실)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
감사	· 행정감사, 기술감사, 윤리경영 업무 등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기구) ① 공사에는 경영혁신본부, <u>자산관리본부</u>, 도시개발본부, 주거복지본부, 균형발전본부 및 감사를 둔다. ② 본부 및 감사에는 처(실·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팀(<u>iH도시연구소·정보보안실</u>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두며, 세부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. ③ ~ ⑦ (생략)	제10조(기구) ① ----- ----- <u>투자유치본부</u>,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<u>정보보안실</u>----- ----- -----.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직제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가. 市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고도화 및 정원 증원 결과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제 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구 변경(별표1)

1) 본부급 : 본부 명칭변경

(1) 자산관리본부를 투자유치본부로 명칭변경

2) 처급 : 신설, 재배치, 명칭변경

(1) 부서 신설

- [사장직속] iH도시연구실 신설

- [도시개발본부] 구월2사업처 신설

(2) 부서 재배치 및 명칭변경

- 당초 : 법무실 → 변경 : 법무기준처

- 당초 : 기술지원처 → 변경 : 스마트기술처

3) 팀급 : 재배치, 명칭변경, 신설

(1) 부서 재배치

- 안전관리실 품질관리팀 → 법무기준처 품질관리팀

- 도시개발처 구월2사업팀 →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

- 신도시사업처 계양사업팀 → 도시개발처 계양사업팀

(2) 부서 명칭변경

- 당초 : 안전관리팀 → 변경 : 안전계획팀
- 당초 : iH도시연구소 → 변경 : 도시연구팀
- 당초 : AI기술총괄팀 → 변경 : 스마트기술팀
- 당초 : 구월2사업팀 → 변경 : 구월2계획팀
- 당초 : 균형기획팀 → 변경 : 도시균형기획팀
- 당초 : 균형사업팀 → 변경 : 도시균형사업1팀

(3) 부서 신설

- [안전관리실] 안전관리팀
- [기획조정실] 정보화사업팀
- [iH도시연구실] AX전략팀
- [법무기준처] 법무지원팀
- [구월2사업처] 구월2사업팀
- [도시균형처] 도시균형사업2팀

나. 부서 정원 변경(별표2)

- 1) 증원된 정원(465명) 및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부서별 정원조정

다. 업무분장 변경(별표3)

- 1) 개편된 조직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장 변경

- (1) 정보화사업 전담체계 구축에 따른 소관업무 이관
- (2) AX전략팀 전담체계 구축에 따른 전사 AI 소관업무 이관
- (3) 품질관리팀 재배치에 따른 소관업무 이관
- (4) 구월2사업처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이관
- (5) 인증업무 처리지침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

3. 사전절차

가. 사규안 입안예고 생략 : 사규 입안예고제 시행내규 제4조제1항제1호

나. 홈페이지 사전게시 생략 :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제3항

다.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: 사규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4호

기획조정실-3272(2026. 6. 19.)호

직제규정 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

2026년 7월 1일

내규 제681호

직제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

직제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부터 별표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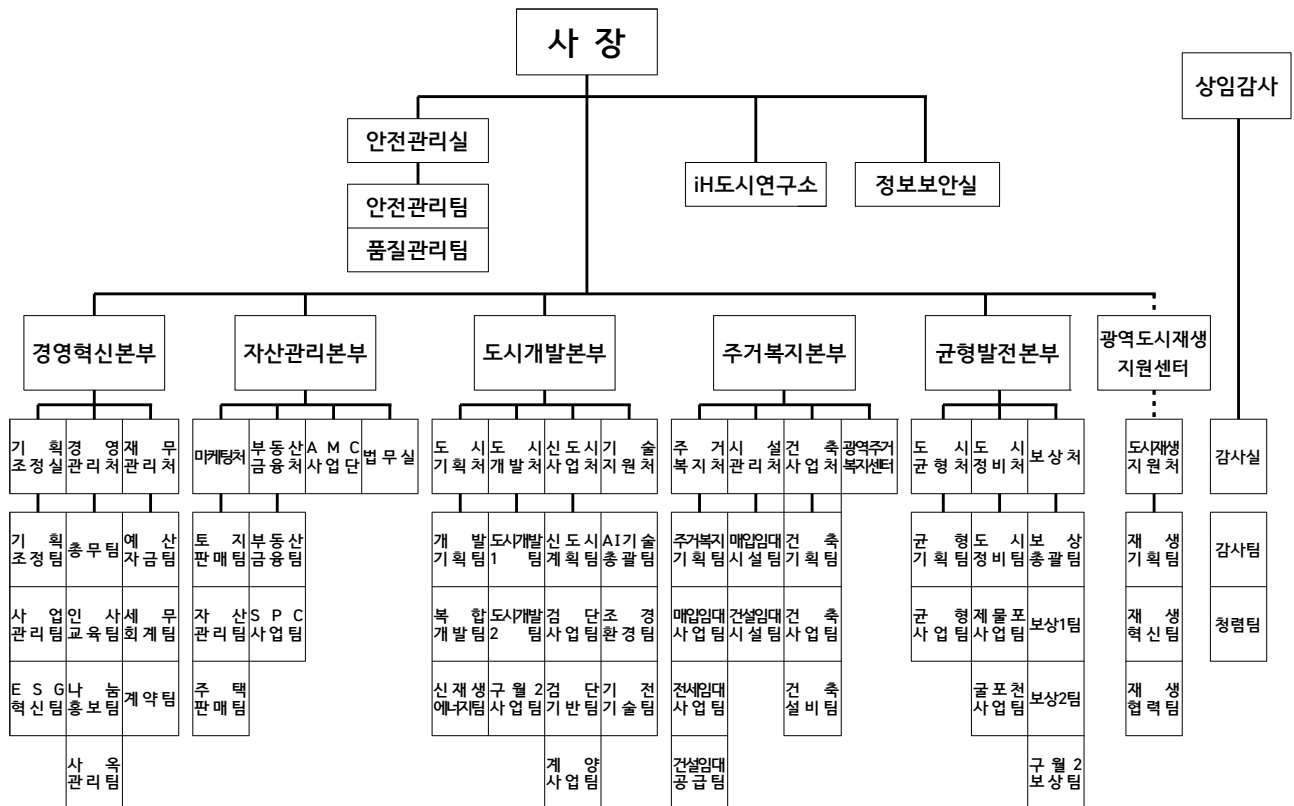
부칙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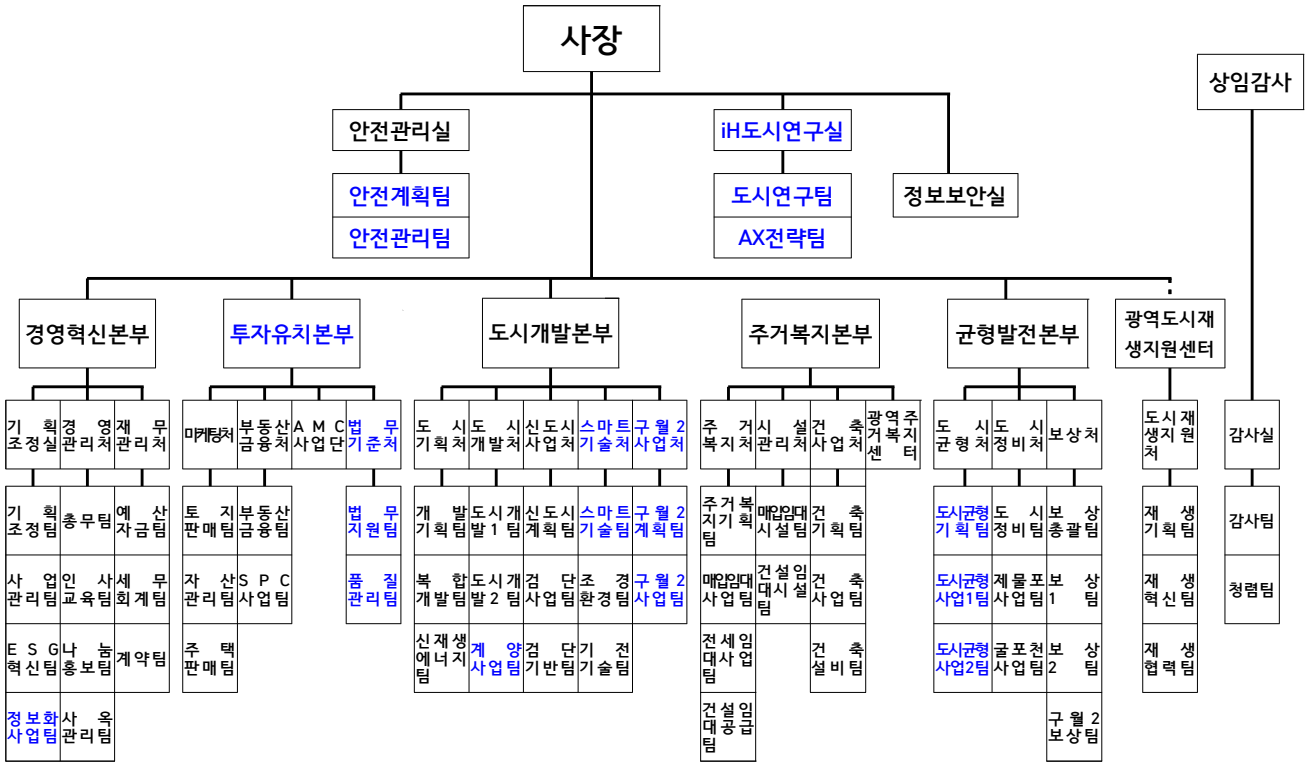
현행

기구표(제2조의3 관련)



개정안

기구표(제2조의3 관련)



[별표 2]

현행

본부·감사 정원표(제3조제1항 관련)

본부	처	계	임원	관리직			사무·기술직					운영직				
				계	1급	2급	계	3급	4급	5급	6급~7급	계	1급	2급	3급	4급
계		435	4	24	3	21	393	56	111	112	114	14	3	4	5	2
임원·임원급		7	4	3	3		0					0				
경영 혁신본부 (79)	기 획 조 정 실	22		1		1	21	3	6	8	4	0				
	경 영 관 리 처	35		1		1	31	5	8	9	9	3	1		1	1
	재 무 관 리 처	22		1		1	20	3	5	6	6	1		1		
자산 관리본부 (53)	마 케 팅 처	26		1		1	24	3	7	7	7	1		1		
	부 동 산 금 융 처	14		2		2	12	2	4	2	4	0				
	A M C 사 업 단	7		1		1	6		4	1	1	0				
	법 무 실	6		1		1	5	1	2	1	1	0				
도시 개발본부 (109)	도 시 기 획 처	16		1		1	15	3	4	4	4	0				
	도 시 개 발 처	28		1		1	27	3	8	8	8	0				
	신 도 시 사 업 처	35		1		1	34	4	9	10	11	0				
	기 술 지 원 처	30		1		1	29	3	9	9	8	0				
주거 복지본부 (73)	주 거 복 지 처	25		1		1	20	4	5	5	6	4	1	1	1	1
	시 설 관 리 처	16		1		1	15	2	4	4	5	0				
	건 축 사 업 처	29		1		1	28	3	8	8	9	0				
	광역주거복지센터	3		0			2		1	1		1			1	
균형발전 본부 (73)	도 시 균 형 처	19		1		1	17	2	4	4	7	1			1	
	도 시 정 비 처	21		1		1	20	3	6	5	6	0				
	보 상 처	33		1		1	29	4	6	10	9	3	1	1	1	
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(5)		5		1		1	4	1	1		2	0				
안 전 관 리 실 (17)		17		1		1	16	2	5	5	4	0				
i H 도 시 연 구 소 (5)		5		0			5	2	1	1	1	0				
정 보 보 안 실 (4)		4		0			4	1	1	2		0				
감사	감 사 실(10)	10		1		1	9	2	3	2	2	0				

개정안

본부 · 감사 정원표(제3조제1항 관련)

본부	처	계	임원	관리직			사무·기술직					운영직				
				계	1급	2급	계	3급	4급	5급	6급~7급	계	1급	2급	3급	4급
계		465	4	26	3	23	420	62	118	119	121	15	3	4	6	2
임원·임원급		7	4	3	3		0					0				
경영 혁신본부 (83)	기 획 조 정 실	27		1		1	26	4	8	8	6	0				
	경 영 관 리 처	34		1		1	28	7	7	7	7	5			4	1
	재 무 관 리 처	22		1		1	19	3	6	5	5	2		1		1
투자 유치본부 (64)	마 케 팅 처	28		1		1	26	3	7	8	8	1	1			
	부 동 산 금 융 처	14		2		2	12	2	3	3	4	0				
	A M C 사 업 단	8		1		1	7		3	2	2	0				
	법 무 기 준 처	14		1		1	13	2	3	4	4	0				
도시 개발본부 (117)	도 시 기 획 처	19		1		1	17	3	4	5	5	1		1		
	도 시 개 발 처	36		1		1	35	3	11	10	11	0				
	신 도 시 사 업 처	23		1		1	22	3	6	6	7	0				
	스 마 트 기 술 처	30		1		1	29	3	8	9	9	0				
	구 월 2 사 업 처	9		1		1	8	2	2	2	2	0				
주거 복지본부 (77)	주 거 복 지 처	27		1		1	22	4	6	6	6	4	1	1	2	
	시 설 관 리 처	17		1		1	16	2	4	5	5	0				
	건 축 사 업 처	30		1		1	29	3	8	9	9	0				
	광역주거복지센터	3		0			3		1	2		0				
균형발전 본부 (75)	도 시 균 형 처	21		1		1	19	3	4	5	7	1	1			
	도 시 정 비 처	21		1		1	20	3	6	5	6	0				
	보 상 처	33		1		1	31	4	9	9	9	1		1		
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(5)		5		1		1	4	1	1		2	0				
안 전 관 리 실 (13)		13		1		1	12	2	4	3	3	0				
i H 도 시 연 구 실 (10)		10		1		1	9	2	3	2	2	0				
정 보 보 안 실 (4)		4		0			4	1	1	2		0				
감사	감 사 실(10)	10		1		1	9	2	3	2	2	0				

[별표 3]

현행

업무분장(제5조 관련)

☐ 경영혁신본부

처·팀명	업무분장 내용
기획조정실 기획조정팀 사업관리팀 ESG혁신팀	1. ~ 44. (생략)
경영관리처 총무팀 인사교육팀 나눔홍보팀 사옥관리팀	1. ~ 69. (생략)
재무관리처 예산자금팀 세무회계팀 계약팀	1. ~ 31. (생략)

☐ 자산관리본부

처·팀명	업무분장내용
마케팅처 토지판매팀 자산관리팀 주택판매팀	1. ~ 48. (생략)

부 동 산 금 용 처 부 동 산 금 용 팀 S P C 사 업 팀	1. ~ 14. (생 략)
A M C 사 업 단	1. ~ 6. (생 략)
법 무 실	1. ~ 10. (생 략)

□ 도시개발본부

처 · 팀명	업무분장내용
도 시 기 획 처 개 발 기 획 팀 복 합 개 발 팀 신재생에너지팀	1. ~ 22. (생 략)
도 시 개 발 처 도 시 개 발 1 팀 도 시 개 발 2 팀 구 월 2 사 업 팀	1. ~ 18. (생 략)
신 도 시 사 업 처 신 도 시 계 획 팀 검 단 사 업 팀 검 단 기 반 팀 계 양 사 업 팀	1. 신도시(검단, 계양테크노밸리) 개발사업 총괄 2. ~ 22. (생 략)
기 술 지 원 처 A I 기 술 총 괄 팀 조 경 환 경 팀 기 전 기 술 팀	1. ~ 32. (생 략)

□ 주거복지본부

처 · 팀명	업무분장내용
주 거 복 지 처 주거복지기획팀 매입임대사업팀 전세임대사업팀 건설임대공급팀	1. ~ 17. (생략)
시 설 관 리 처 매입임대사업팀 건설임대사업팀	1. ~ 14. (생략)
건 축 사 업 처 건 축 기 획 팀 건 축 사 업 팀 건 축 설 비 팀	1. ~ 26. (생략) 27.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등급, 홈네트워크 건물등급, 신재생에너지 등 인증 및 취득 28. ~ 29. (생략)
광역주거복지센터 *한시조직	1. ~ 8. (생략)

□ 균형발전본부

처 · 팀명	업무분장내용
도 시 균 형 처 균 형 기 획 팀 균 형 사 업 팀	1. ~ 20. (생략)
도 시 정 비 처 도 시 정 비 팀 제 물 포 사 업 팀 굴 포 천 사 업 팀	1. ~ 27. (생략)

보 상 처	1. ~ 21. (생 략)
보 상 총 괄 팀	
보 상 1 팀	
보 상 2 팀	
구 월 2 보 상 팀	

☐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

처 · 팀명	업무분장내용
도시재생지원처	1. ~ 7. (생 략)
재 생 기 획 팀	
재 생 혁 신 팀	
재 생 협 력 팀	

☐ 안전관리실

처 · 팀명	업무분장내용
안 전 관 리 실	1. ~ 26. (생 략)
안 전 관 리 팀	
품 질 관 리 팀	

☐ iH도시연구소

처 · 팀명	업무분장 내용
iH도시연구소	1. ~ 6. (생 략)

☐ 정보보안실 ~ 감사 (생 략)

개정안

업무분장(제5조 관련)

□ 경영혁신본부

처 · 팀명	업무분장 내용
기 획 조 정 실 기 획 조 정 팀 사 업 관 리 팀 E S G 혁 신 팀 정 보 화 사 업 팀	1. ~ 42. (현행과 같음) 43. 장단기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· 시행 44. 경영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· 관리(원가관리시스템 포함) 45.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46. 임직원의 정보화능력 개발 및 증진에 관한 업무 47. 전자결재 등 전산시스템 관리 48. 전산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49.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, 변경에 관한 업무 50. 전산정보 업무표준화 및 연구개발, 보급 · 지원 51. 경영공시 업무 52. 공공데이터에 관한 업무 53.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54. ~ 55. (현행 43. ~ 44.과 같음)
경 영 관 리 처 총 무 팀 인 사 교 육 팀 나 눔 홍 보 팀 사 옥 관 리 팀	1. ~ 24. (현행과 같음) 25. ~ 58. (현행 36. ~ 69.과 같음)
재 무 관 리 처 예 산 자 금 팀 세 무 회 계 팀 계 약 팀	1. ~ 31. (현행과 같음)

□ 투자유치본부

처 · 팀명	업무분장내용
마 케 팅 처 토 지 판 매 팀 자 산 관 리 팀 주 택 판 매 팀	1. ~ 48. (현행과 같음)
부 동 산 금 융 처 부 동 산 금 융 팀 S P C 사 업 팀	1. ~ 14. (현행과 같음)
A M C 사 업 단	1. ~ 6. (현행과 같음)
법 무 기 준 처 법 무 지 원 팀 품 질 관 리 팀	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택지, 건축, 도시재생, 기술분야 설계표준화 관련(공법, 자재,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 등) 지침 및 기준에 관한 총괄 및 관리 업무 11. 건설공사 원가관리시스템(ICMS) 운영 및 관리 12.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3.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 14. 시 설계경제성검토(VE) 지원 15.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원 16.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17.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운영 18. 신기술·특허공법 업무지침 관리 19. 성과공유제 도입, 관리 등의 업무 20. ISO 9001(품질경영시스템) / 14001(환경경영시스템) 인증관리 업무 21. 스마트업무매뉴얼 제정·폐지 및 관리 업무 22. 동반성장포털 운영관리 23. (현행 10.과 같음)

□ 도시개발본부

처 · 팀명	업무분장내용
도 시 기 획 처 개 발 기 획 팀 복 합 개 발 팀 신 재 생 에 너 지 팀	1. ~ 22. (현행과 같음)
도 시 개 발 처 도 시 개 발 1 팀 도 시 개 발 2 팀 계 양 사 업 팀	1. ~ 18. (현행과 같음)
신 도 시 사 업 처 신 도 시 계 획 팀 검 단 사 업 팀 검 단 기 반 팀	1. 신도시(검단) 개발사업 총괄 2. ~ 22. (현행과 같음)
스 마 트 기 술 처 스 마 트 기 술 팀 조 경 환 경 팀 기 전 기 술 팀	1. ~ 27. (현행과 같음) 28. (현행 32.과 같음)
구 월 2 사 업 처 구 월 2 계 획 팀 구 월 2 사 업 팀	1. 소관사업 사업타당성 및 사업비 관리 2. 소관사업 원가관리 업무 총괄 3. 소관사업 개발계획, 실시계획, 인허가 변경 업무 4. 소관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업무 5. 소관사업의 각종 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 6. 소관사업의 조성원가 산정 및 각종 부담금에 관한 업무 7. 소관사업의 대외협약(협약체결, 사업비 관리, 정산 등)에 관한 업무

	8. 소관사업의 구역·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,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(또는 대행) 9. 소관사업 공사 발주 및 감독업무 10. 소관사업 관급자재 및 공사자재(지급자재)의 수급계획 및 운영 11. 소관사업 선급금, 설계변경, 기성, 준공 등 관련업무 12. 소관사업 준공, 공공시설물 인계인수, 지적·측량 및 하자보수에 관한 업무 13. 소관사업 참여업체 시공평가, 행정조치 및 부실벌점 관리에 관한 업무 14. 소관사업 재해대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15. 소관사업 지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6. 소관사업 준공 사업지구 관리 업무 17. 그 밖에 소관사업에 관한 제반업무
--	---

□ 주거복지본부

처·팀명	업무분장내용
주 거 복 지 처 주거복지기획팀 매입임대사업팀 전세임대사업팀 건설임대공급팀	1. ~ 17. (현행과 같음)
시 설 관 리 처 매입임대시설팀 건설임대시설팀	1. ~ 14. (현행과 같음)
건 축 사 업 처 건축기획팀 건축사업팀 건축설비팀	1. ~ 26. (현행과 같음) 27.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, 신재생에너지 등 인증 및 취득 28. ~ 29. (현행과 같음)

광역주거복지센터 *한시조직	1. ~ 8. (생략)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□ 균형발전본부

처·팀명	업무분장내용
도시균형처 도시균형기획팀 도시균형사업1팀 도시균형사업2팀	1. ~ 20. (현행과 같음)
도시정비처 도시정비팀 제물포사업팀 굴포천사업팀	1. ~ 27. (현행과 같음)
보상처 보상총괄팀 보상1팀 보상2팀 구월2보상팀	1. ~ 21. (현행과 같음)

□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

처·팀명	업무분장내용
도시재생지원처 재생기획팀 재생혁신팀 재생협력팀	1. ~ 7. (현행과 같음)

□ 안전관리실

처 · 팀명	업무분장내용
안 전 관 리 실 안 전 계 획 팀 안 전 관 리 팀	1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(현행 26.과 같음)

□ iH도시연구실

처 · 팀명	업무분장 내용
iH도시연구실 도 시 연 구 팀 A X 전 략 팀	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AI 전환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· 총괄 7. AI 활용에 관한 내부 규정,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 · 개정 8. AI 기반 서비스 발굴 및 실증사업 추진 9. 정부 및 인천시 AI 정책 대응 및 대외 협력체계 구축 10. (현행 6.과 같음)

□ 정보보안실 ~ 감사 (현행과 같음)

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- 가. 팀 성적 및 선수단원 개인의 기량을 고려하여 잔여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계약을 제시하여 선수단원의 기량발전 유인 확보
- 나. 보수의 구성항목 명시 및 계약금과 기본급의 정의 구분 등 ‘보수’에 대한 정의 명확화
- 다.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계약금 지급 관련 조항 명확화

2. 주요내용

- 가. 계약기간이 잔존한 선수들의 추가 연장계약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항신설 (제7조제3항, 제16조의2제2항)
- 나. 보수의 구성항목, 기본급의 정의 명확화 (제16조)
- 다. 계약금 지급관련 조문 명시 (제16조의2제1항)

3. 사전절차

- 가. 사규안 입안예고 : 2026. 6. 9. ~ 2026. 6. 15.
- 나. 홈페이지 사전게시 : 2026. 6. 9. ~ 2026. 6. 15.
- 다.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: 2026. 6. 25. 원안가결

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

2026년 7월 1일

규정 제737호

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일부개정

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개인기량과 기여도, 경기성적 등을 고려하여 양자 합의로 계약의 변경이나 갱신을 제안할 수 있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보수) ① 선수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.

② 선수단원의 보수는 계약금, 기본급, 기타 수당 등으로 하며, 지원인력의 보수는 공무원 관리규정에 따른다.

③ 제2항의 기본급은 연봉제로 하고 지급은 연봉을 12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공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④ 선수단원 중 신규 입사자 또는 퇴직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한다.

⑤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목별 선수단 운영내규로 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계약금) ① 우수한 선수단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계약 시 선수단원의 기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할

수 있다.

②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 및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금은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른 계약금 기지급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을 지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고용계약) ① (생략) ② 공사와 선수단원의 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하고, 계약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창단년도 및 군제대선수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<u>다만,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양자 합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</u> <u><신설></u> ③ ~ ⑤ (생략) 제16조(보수·수당 등) ① 선수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와 각종 훈련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. ② 선수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고 보수지급은 연봉을 12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공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, 지원인력의 보수는 공무원 관리규정에 따른다. ③ 선수단원 중 신규 입사 또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. ④ 연봉액과 훈련비, 대회출전비(전지훈련비) 및 각종 수당(포상금)등에	제7조(고용계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u><삭제></u> ③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개인기량과 기여도, 경기성적 등을 고려하여 양자 합의로 계약의 변경이나 갱신을 제안할 수 있다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6조(보수) ① 선수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. ② 선수단원의 보수는 계약금, 기본급, 기타 수당 등으로 하며, 지원인력의 보수는 공무원 관리규정에 따른다. ③ 제2항의 기본급은 연봉제로 하고 지급은 연봉을 12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공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 ④ 선수단원 중 신규 입사자 또는 퇴직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한다. ⑤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목별

현행	개정안
<u>관한 세부사항은 종목별 선수단 운영내규로 정한다.</u> <u><신 설></u>	<u>선수단 운영내규로 정한다.</u> <u>제16조의2(계약금) ① 우수한 선수단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계약 시 선수단원의 기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 및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금은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른 계약금 기지급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을 지급한다.</u>